



KTV 방송·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

[시행 2026. 1. 1.] [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203호, 2026. 1. 1., 일부개정]

한국정책방송원(기획편성부), 044-204-811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(이하"방송원"이라 한다.)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(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. 이하 "프로그램"이라 한다)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23. 6. 26.]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방송제작비(이하 "제작비"라 한다)"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, 출연료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. [개정 2026. 1. 1.]
- ② "표준제작비"라 함은 방송·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. [개정 2023. 6. 26.]
- ③ 삭제 [2025. 1. 1.]
- ④ "온라인콘텐츠"라 함은 인터넷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온라인 매체 유포를 주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을 말한다. [신설 2018. 4. 2.]

제2조의1(표준제작비 산정 및 시행) ① 표준제작비는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(연초 심의 시 표준제작비 적정성 포함) 배정한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'KTV 방송·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'에 따라 담당부장 또는 원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 [신설 2023. 6. 26.]

② 제1항에 의해 확정된 표준제작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와 프로그램을 신설·폐지 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. [신설 2023. 6. 26.]

1. 각 부서 연간 프로그램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과 협의 후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.
2. 각 부서 제작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을 거쳐 기획편성부장과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.
3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 규모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및 편성전략팀장을 거쳐 기획편성부장과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.
 - 가. 심의 확정된 프로그램 예산이 3천만원 이상 변경될 경우
 - 나. 연중 3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하거나 폐지할 경우
 - 다. 총액으로만 심의 배정된 3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

제3조(등급적용 등) ① 제작비 지급 대상자의 등급적용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.

- ② 삭제 [2023. 6. 26.]

- ③ MC 출연료 등급적용에 있어, 진행자라 함은 대학·연구소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,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의 전문경력과 품위를 갖춘 자로 한다. [개정 2015. 9. 30.] [개정 2022. 5. 30.]
- ④ MC 출연료 등급적용 시 인정되는 경력은 지상파의 경우 본인 경력의 100%를 인정하며, KTV 채널과 유사한 케이블방송의 경우 본인 경력의 80%, 그 외 케이블방송의 경우 본인 경력의 60%를 인정한다, 단 기상캐스터 및 리포터의 경력은 본인 경력의 50%를 인정한다. [개정 2011. 8. 1.] [개정 2011. 10. 07.] [개정 2015. 9. 30.] [개정 2022. 5. 30.]
- ⑤ PD, 구성작가, 성우 등 제작인력의 경력산정은 방송, 광고, SNS 영상물 등 연관 분야의 경력을 포함한다. [신설 2018. 4. 2.] [개정 2022. 5. 30.]
- ⑥ 온라인콘텐츠 제작비 등급은 제작 주기와 제작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집구성, 종합구성, 일반구성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22. 5. 30.]
1. 특집구성: 캠페인 및 계기별 특집 등 고난이도 영상물
 2. 종합구성: 주간 2회 이하의 기획구성물
 3. 일반구성: 주간 3회 이상의 단순제작물 [신설 2018. 4. 2.]
- ⑦ 표준제작비는 산정 시 프로그램별 제작인원 및 적정등급을 확정하고, 이후 경력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[신설 2018. 4. 2.] [개정 2022. 5. 30.] [개정 2023. 6. 26.]

제4조(단위시간 적용기준) ① 제작비 지급단위 시간기준은 편성시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2개 이상의 방송소재로 연결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 각 소재별로 구성작가가 다른 경우, 각 코너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제작비를 지급한다. 다만,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담당 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.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13. 11. 5.] [개정 2015. 9. 30.]

제5조(MC출연료) ① 삭제 [개정 2023. 6. 26.]

- ② MC출연료는 주간물과 일일물 제작으로 구분하여 출연료 단가를 산·적용하며 주간물과 일일물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5. 9. 30.]
1. 주간물은 주 2회 이하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
 2. 일일물은 주 3회 이상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며 일일 생방송 및 뉴스를 포함한다.
- ③ MC출연료의 경우, 단위시간을 10분당 기준으로 30분까지 적용하고, 그 이상은 규정에 따라 추가 10분마다 30~50%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제작비 지급) ① 제작비 지급은 별표 1의 방송제작비 지급기준에 의한다.

- ② 제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현지에서 직접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로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출연료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공무원이 출연한 경우에는 일반출연료의 50% 범위 내에서 자료조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한국정책방송원 직원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(담당업무에 관계없이 출연하는 경우도 포함)에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[개정 2012. 9. 28.] [개정 2018. 4. 2.]

⑤ 삭제 [2023. 6. 26.]

⑥ 신설되는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사전기획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기획기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.

1. 대상기간: 표준제작비 시행 전 [개정 2023. 6. 26.]

2. 지급범위: 연출료 및 구성작가료 등

3. 지급기준: 별표 1의 기준금액 70% 이내 [신설 2018. 4. 2.] [개정 2023. 2. 1.]

제7조(지급액의 조정) ① 제작비 지급기준은 제작비 지급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이며 담당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13. 11. 5.]

② 삭제 [2023. 6. 26.]

③ 야외에서 프로그램(단일 프로에서 스튜디오와 야외에서 각각 출연하는 프로그램 포함)을 제작하는 경우, 출연료는 편당 기본출연료에 50%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동일 프로그램에 동일인이 집필과 출연을 겸하였을 경우의 제작비 지급은 집필과 출연 중 유리한 것 하나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, 다른 하나는 지급 기준액의 80%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⑤ 일일 생방송 및 뉴스 프로그램의 MC가 연속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, 추가되는 방송 진행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50%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. [제5조 4항에서 이동 <2015. 9. 30.>] [개정 2015. 9. 30.]

⑥ 삭제 [2023. 6. 26.]

제8조(규정 외의 제작비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제작비 지급기준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사유를 명시해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한다. [개정 2023. 6. 26.]

② 근무지 외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 지급 기준액 이외에 공무원여비규정(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)에 의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23. 6. 26.]

제9조(계획 변경 시 제작비 지급) ① 생방송 프로그램이 편성 등의 이유로 출연 대기 중에 취소 시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한다. [개정 2023. 6. 26.]

1. 삭제 [2023. 6. 26.]

2. 삭제 [2023. 6. 26.]

② 제1항을 제외하고 방송계획에 의하여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원 측의 사정으로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작비를 지급한다. [개정 2013. 11. 5.] [개정 2015. 9. 30.]

1. 방송용으로 제작이 완료된 경우: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

2. 출연자가 방송출연을 위하여 소정의 연습을 완료하였거나 출연 대기 중에 제작이 중단된 경우: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50% 범위 안에서 지급

3. 방송용으로 제작 진행 중에 제작이 중단된 경우: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50% 범위 안에서 지급

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는 방송제작 변경내용을 표기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[개정 2023. 2. 1.]

제10조 삭제 [2007. 3. 6.]

제11조(기념품 등 지급) 출연료 지급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회 저명인·가두 인터뷰에 응한 불특정인 및 직업 연예인이 아닌 어린이 등에 대하여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 범위 안에서 출연료 대신 기념품 등에 준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15. 9. 30.] [개정 2023. 6. 26.]

제12조(진행비) 삭제 [2025. 1. 1.]

제13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삭제 [2023. 6. 26.]

제14조(위원회의 회의) 삭제 [2023. 6. 26.]

부칙 <제203호,2026.1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제6조에 의해 산정된 단가는 종전 단가를 적용한다.